

case

1

## 드로잉 태블릿

### 요약

사례명	드로잉 태블릿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606 (2021.06.16.)
사실관계	전면·후면 커버 모듈, 전자기 공명 보드, blank PCB, 스타일러스 펜 등의 중국산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한 뒤, SMT 공정을 통한 3가지 PCBA(키패드 보드, 스케일러 보드, 센서 제어 보드) 제조, 일본 및 대만산 펌웨어 설치, 최종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드로잉 태블릿 완성
쟁점 및 판정	<p><b>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CBP는 SMT 공정을 이용해 다양한 기판에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생산된 세 개의 개별 PCBA(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의 원산지는 대만이라고 판정함</li><li>대만산 PCBA와 중국산 부품 및 구성 요소는 각 부품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장치에 본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li><li>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수행되는 여러 공정(PCBA 제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각 부품 조립 등)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작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li></ul>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1)</sup>

## 사례명 [드로잉 태블릿]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606 (2021.06.16.)

## 사실관계

요청자 Wacom Technology Corporation (대리인: Damon V. Pike, Esq.)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acom Cintiq 16 with Pro Pen 2</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D 디스플레이 모듈</li> <li>전면·후면 커버 모듈</li> <li>4가지 종류의 PC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 공명 보드 (EMRB, Electro-Magnetic Resonance Board)</li> <li>- 키패드 보드 (Keypad Board)</li> <li>- 스케일러 보드 (Scaler Board)</li> <li>- 센서 제어 보드 (SCB, Sensor Control Board)</li> <li>- 전원 어뎁터, 전원 케이블, 스타일러스 펜 등</li> </ul> </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 드로잉 및 이미지 작업을 수행</li> <li>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자동 자료 처리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li> </ul>

제품	부품	기능
기능	EM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센서 코일이 부착된 단순한 PCB 보드로서 LCD 화면 뒤에 부착되어 센서 코일이 자기장을 통해 각 펜 스트로크를 캡처할 수 있도록 설계됨</li> </ul>
	키패드 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블릿 내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기본적으로 전원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담당</li> </ul>
	스케일러 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D 화면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출력 장치로 4개의 PCBA 중 가장 많은 수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li> </ul>
	S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MRB에 부착된 센서 코일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펜의 위치, 압력, 속도를 인식하고, 이를 해석하여 디지털화된 입력 신호로 변환한 후 스케일러 보드로 전송</li> <li>SCB가 존재하지 않으면, EMR 보드는 센서로 기능하지 못함</li> </ul>
	스타일러스 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D 화면 위에 이미지를 그리는 장치</li> </ul>
	LCD 디스플레이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D 화면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하는 출력 장치</li> </ul>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중국산 전면·후면 커버 모듈, EMRB, 스타일러스 펜, 펜 홀더,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blank PCB를 대만으로 수입
2. 대만 제조 공정
  - SMT 공정을 통해 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 제조
  - 일본산 WTC 태블릿 펌웨어 및 대만산 스케일러 보드 펌웨어를 SCB 및 스케일러 보드에 설치
  - 스케일러 보드 및 키패드 보드를 프린트 커버 모듈에 부착
  - SCB를 프린트 커버 모듈 내 LCD 패널에 부착
  - 백커버 모듈과 프린트 커버 모듈을 나사를 이용해 결합
3.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이 외에도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같은 요소들도 고려될 수 있음
- CBP는 PCBA와 관련하여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를 이용해 기판에 다양한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반 기판(blank PCB) 및 해당 부품들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C.S.D 19 Cust. Bull. 844 (1985)

- CBP는 본 사안과 동일한 제품인 Cintiq 16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판정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으나, 본 사안과는 제조 공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714 (2020.01.23.)

**사례** 대부분의 제조 공정은 본 사례와 비슷하나 네 개의 PCBA 중 EMRB, 키패드 보드, 스케일러 보드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대만에서는 SCB 제조 및 각 부품들의 부착, 고정, 테이핑, 접착 등의 작업만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제조되어 대만으로 수입된 세 개의 PCBA 및 개별 서브 어셈블리들은 Cintiq 16에 사용되기 위해 전용 제작된 것으로, 대만에서의 조립 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인 것으로 판정

- CBP는 여러 개의 PCBA를 포함한 장치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해당 장치에 포함된 PCBA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장치에 본질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이 무엇인지, 완성품 내에서 각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을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544 (2020.01.15.)

**사례** 대만산 주요 PCBA 2개와 중국산 보조 PCBA 2개를 포함한 여러 부품을 중국에서 가공하여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생산

**판정** 대만산 주요 PCBA가 완제품의 본질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이러한 주요 PCBA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을 원산지로 판정

- 다만, 어떤 부품이 더 중요한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국가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의 성격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수행된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참고 판정: BP Ruling HQ H015324 (2008.04.23.)

**사례** 중국 또는 대만산 LCD 모니터 2개, 특별한 빔스플리터 미러 및 맞춤형 스탠드로 구성된 입체 (스테레오스코피) 디스플레이로서, 이들 모니터 중 하나는 미국으로 수입된 후 광학 변환 (optical transformation) 공정 및 조립, 정렬, 시험을 거치고 미국에서 조립을 통해 최종 제품이 생산됨

**판정** 미국에서 수행된 편광(polarization) 공정이 LCD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체 시스템에 입체 디스플레이 기능을 부여하며, 디스플레이의 조립, 시험, 정렬에는 숙련된 기술자의 상당한 시간과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므로 광범위한 가공 작업이 수행된 미국을 원산지로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판정 결과

- ▣ CBP는 SMT 공정을 이용해 다양한 기판에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 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생산된 세 개의 개별 PCBA(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의 원산지는 대만이라고 판정함
- ▣ 신청인은 대만에서 생산된 3개의 PCBA가 Cintiq 16 드로잉 태블릿에 본질적인 기능을 부여하며, 특히 SCB는 태블릿 내부에서 압력 감지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 부품으로, 단순히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LCD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반 태블릿(Apple iPad, Microsoft Surface)과 Cintiq 16을 구분 짓는 요소라고 주장
  - 또한 대만산 PCBA들이 중국산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보다 훨씬 정교하며, 포함된 개별 부품 수 역시 훨씬 많다고 주장함
- ▣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CBP는 대만산 PCBA와 중국산 부품 및 구성 요소는 각 부품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장치에 본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
- ▣ 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수행되는 여러 공정(PCBA 제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각 부품 조립 등)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작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II 시사점

- 여러 개의 PCBA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장치에 포함된 여러 PCBA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어떤 부품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함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606>
- CBP Ruling NY N308714 (2020.01.23), <https://rulings.cbp.gov/ruling/N308714>
- CBP Ruling NY N308544 (2020.01.15), <https://rulings.cbp.gov/ruling/N308544>
- CBP Ruling HQ H015324 (2008.04.23), <https://rulings.cbp.gov/ruling/H01532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